

규정

시행 규칙 (EU) 2018/461

2018년 3월 20일

유럽 의회와 이사회
의 규정 (EU) 2015/2283에 따라
신규 식품 taxifolin-rich 추출물의 판매를 허가하고
시행 규칙 2017/2470을 개정함

별첨

시행규칙 (EU) 2017/2470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.

(1) 표 1 (인증된 노블푸드)의 'Taxifolin-rich extract' 항목은 다음과 같이 대체됩니다:

인증된 노블 푸드	식품 사용 조건		추가적인 특정 표시 요구 사항	기타 요구 사항
Taxifolin-rich extract	특정 식품 분류	최고 용량	해당 식이 보충제를 함유하는 식품은 'Taxifolin-rich extract'로 표기되어야 한다.	
	요거트 / 과일 요거트 (*)	0.020 g/kg		
	케피르 (*)	0.0008 g/kg		
	버터밀크 (*)	0.0005 g/kg		
	분유 (*)	0.052 g/kg		
	크림 (*)	0.070 g/kg		
	사워 크림 (*)	0.050 g/kg		
	치즈 (*)	0.090 g/kg		
	버터 (*)	0.164 g/kg		
	초콜렛 과자	0.070 g/kg		
	무알콜 음료	0.020 g/l		
	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2002/46/EC에서 정의한 식품보충제 (14세 미만의 유아 제외) (*) 유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우유 성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체할 수 없다.	100 mg/day		